결혼생활의 비밀을 공표하는 행위는 중간금지강제명령의 신청대상이 된다

Dnchess of Argyll v. Dure of Argyll and Others.

Chancery Division 1964 년 11 월. 1, 4, 9 일

<사실개요>

대법원법 제 45 조 1 항(1925 년)에 의하면 「고등법원은 법정이 정당하거나 타당하다고 보는 모든 사건에서 중간명령으로서 금지강제명령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51 년 3 월에 원고와 제 1 피고는 결혼했다. 1959 년에 제 1 피고는 스코트랜드의 대법원 민사부에 원고의 간통을 이유로, 원고와의 이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원고는 항변하였고, 1960 년에는 반대소송을 제기했다. 1962 년에 그녀는 반대소송을 취하하였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63 년에 이혼소송절차가 심리되었고 결혼취소판결이 내려졌다. 동년에 원고는 제 1 피고의 지적행위와 재정업무에 관해 언급한 내용을 선데이 미러지에 기고하여 게재케 하였다. 한편 제 1 피고는 다른 일요지인 더 피플지에, 원고와의 결혼생활동안의 비밀에 관한 내용을 더 피플지 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사를 게재케 하였다. 이에 대해 1964 년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결정신청을 통해 제 1 피고가, 제 2 피고인 일요지의 편집인과 제 3 피고인 소유인과의 의견교환을 규제할 중간강제 금지명령을 내릴 것을 신청하고, 제 2, 제 3 피고들이 그녀의 사생활, 개인적인 문제 혹은 결혼생활동안 제 1 피고와 비밀리 행한 사적 행위 중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들에 관한 비밀이나 정보, 그리고 1926 년에 제정된 사법절차법(Judicial Proceedings Act)의 제 1 조 (1)의 (b)항에 근거, 인정되지 않고 있는 스코트랜드에서의 이혼소송절차에 관한 어떤 세부사항도 공표하지 못하게 하는 중간금지강제명령을 신청했다. 그 결과신청의 근거는 제 1 피고가 일요지에 공개할 의도로 쓴 몇몇 기사에 실린 원고에 대한 진술은 결혼상의 비밀침해이며 이는 사법절차법 제 1 조에 대한 위반행위라는 것이다. 법정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결혼은 단순한 법적 계약상의 관계이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들 말한다. 법정이 결혼상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비밀이 계약이나 혹은 소유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면, 결혼상의 비밀도 계약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계약은 묵계에 의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명시될 필요는 없다. 부부간의 비밀과 상호간의 믿음을 보장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이혼사유가 된 한쪽 배우자의 간통사실로 인해서 다른 배우자가 이혼하기 전의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간통사실로 제 1 피고가 그들의 결혼생활동안의 비밀을 공표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공표중지를 규제하기 위한 강제명령은 인정될 수 있다. 원고가 일요지에 쓴 기사내용은 제 1 피고가 쓴 기사에서 폭로된 결혼상의

비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또한 원고의 기사는 결혼상의 비밀을 폭로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원고의 강제명령청구소송은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강제명령은 비밀과 관련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비밀에 관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의한 공표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강제명령은 제 2, 제 3 피고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Ashburtonv. pape (1913) 2Ch. 469 ; 29 T. L. R. 623, C. A 참고] 이혼소송판결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증거를 공표하는 것은 사법절차법 제 1 조에서 볼 때 위법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원고의 이혼반대소송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소송에서 제시된 주장을 공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법적인 것이었다. 1926 년의 사법절차법을 엄밀하게 해석해 볼 때, 이혼소송에 관한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단지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만 그 목적이 국한되지 않고, 그 소송 당사자의 보호측면까지 확대해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또 그 법에 준하면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기소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위법적인 공표로 침해되거나 침해의 위협을 받은 개인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Windeatt v. Windeatt(1962) 1W.L. R.527,532; (1962) 1All E. R.776, C. A. Solomons v. R. Gertzenstein Ltd. (1954) 2.Q.B.243; (1954) 3W. L. R. 317; (1954) 2All E. R.625, C. A 참고] 형사소송을 제한하는 대신 금지강제명령을 인정하고 있는 법정의 사법권한은 금지강제명령이 재산권침해에만 국한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재산권침해와 위법적인 공표로 인해 야기된 것과 같은 형태의 침해를 구분할 이유는 없다. 1925 년에 제정된 대법원법(The Supreme Court of Judicature Act)의 45 조에 따라, 정당하거나 타당할 때는 중간금지강제명령을 인정하고 있는 법정의 사법권은 소송이 인정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사건에만 국한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법정은 법에 의해 규정된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현 사건의 경우, 법적인 권리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또 공표로 인해 원고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1926 년 사법절차법이 준해 그러한 기사의 게재를 중지케 할 중간금지강제명령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결정신청>

원고인 마가렛트 아르질(Argyll)공작부인은 전남편인 제 1 피고 이반 더글라스 아르질 공작(Ivan Douglas)과 제 2 피고, 제 3 피고인 더 피플지의 편집인인 스튜어트 캠펠(R. Stuart Campell) 소유인인 오드햄즈(Odhams) 출판사에 대해 3 건의 중간금지강제명령을 신청했다. 결정신청의 근거는 제 1 피고가 더 피플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쓴 기사들은 원고에 대한 (1) 결혼비밀의 침해이며 (2) 소송과 소송절차에 대한 위반이며 (3) 이혼소송절차에서 제시된 증거를 폭로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고측 변호인주장>

첫번째 금지강제명령은 1951 년 3 월부터 1965 년 3 월까지의 결혼생활에 관한 것으로, 법에 준해서 보면 결혼생활의 비밀은 존중되어야 하며 민·형사소송에서 공공정책상 달리 진실의 증명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번째 금지강제 명령은 심프슨 소송에서 공작과 원고간에 맺어진 비밀수준의 의무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세번째 금지강제명령은 이혼소송절차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를 폭로하는 것은 법정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는 것이다. 1926 년의 사법절차법의 제 1 조 (1),(6)항에 보면, 이혼소송절차에서 제시된 증거를 공표하는 행위에 대한 법정금지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공중뿐만 아니라 그 소송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명예훼손적인 성격의 문제와도 관련되는데, 일반적인 명예훼손문제에 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즉 법정은 만약 필요하다면 특정한 명예훼손적인 글의 출판을 중간금지강제명령으로 금하는 권한을 가지지만, 이것은 최대한 그 글의 내용이 명백히 명예훼손적일 때에 적용할 수 있는 임의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피고가 진술서를 통해 문제가 된 글은 사실이고 진실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법정에서 증명하려 든다면, 법정은 그 전에 그러한 글은 진실된 것도 아니고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는 한 중간금지강제명령은 인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 소송에서 제 1, 제 2 피고들은 진술서를 통해 그들은 기사에서의 명예훼손적 문제들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들 모두 정당성증명 소송을 할 것이라고 진술했다. 결혼생활을 하게 되면 부부들은 일상대화의 사소한 이야깃거리와는 다른 반드시 비밀스런 대화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대화가 부부 중 한쪽 배우자가 그것의 공표를 반대할 정도의 성질이라면 배우자간에 그 대화는 비밀이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식의 특별한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더욱이 결혼생활동안 부부간에 행해진 대화는 존중되고 보호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에 결혼취소가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본 사건에서 결혼생활의 대화의 신성함에 위배되는 것은 공작과 다른 피고들이 그들 자신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 그 대화를 공중에게 보도하려는 욕망에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출판이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이것은 결혼의 비밀침해라는 문제를 떠나서도 단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선정적이고 외설적인 것으로 일부 대중의 기호에 영합하려는 방식으로서 진정한 공중의 이익에 상반되는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피고측 변론>

첫째 1888 년에 수정된 명예훼손법에 의하면 재판과정을 보도할 수 있는 권한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몇몇 보도 즉 몇 가지 사진이나 편지내용이 1926 년의

사법절차법 (1)의 (b), (i)항에 위배된다는 점을 원고가 소송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은 피고의 글을 상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간의 대화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나 법은 없다. 그리고 배우자간의 대화는 비밀스런 것이어서 보호되어야만 한다는 판례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그 대화가 비밀스런 것이었고 혹은 비밀스런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모든 사건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는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 한편 폭로해서 안될 의무는 다음 3 가지 경우에 한한다. (1) 지역사회의 안전장보이 위태로울 때 (2) 변호사와 변호의뢰인과 같이 특별한 관계가 존재할 때 (3)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묵계가 있을 때 예컨대 피고용인이 그가 고용될 시의 사실을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할 경우 등이다. 따라서 이런 목적에서 비밀관계를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또한 그런 관계를 규정한다 할지라도, 결혼관계는 이러한 규정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다. 부부관계상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할지라도 원고자신이 먼저 선데이 미러지에 공개함으로써 비밀은 깨졌다. 또한 원고는 결혼의 신성함에 대한 그녀의 태도를 통해서 볼 때 어떠한 경우에도 그녀 자신은 법적으로 구제받을 자격이 없다.

<앤드류 클락 변호사의 답변>

법정이 결혼비밀의 위반을 규제하기 위해 금지강제명령을 인정할 사법권을 가졌다면, 이번사건은 결혼상의 비밀을 준수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심프슨 소송사건의 경우를 볼진대, 우리는 공작이 그 소송의 주제를 두 번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던 명백한 계약 혹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처사를 간과할 수 없다. 원고의 결혼 생활에 대한 태도를 볼 때 원고는 혼인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로써 삼을 수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 본인은 어느 관례를 찾아보더라도 원고는 이제 결혼의 신성함과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결혼상의 비밀을 지켜온 사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판례는 결코 찾아볼 수 없다. 기껏해야 법정이 자유재량권을 행사하여 중간구제를 인정할 만한 사건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때 고려해 보는 문제에 불과하다.

<토마스 판사(Thonas J.)의 판결>

원고 마가렛트는 아르질 공작과의 결혼이 이혼으로 끝난 세 부인중의 마지막 부인이다. 제 1 피고는 아르질 공작이고, 제 2 피고는 일요지「The People」지의 편집자인 스튜어트 캠펠(R. Stuart Campell)이며 제 3 피고는 그 신문의 소유인 인쇄업자이며 출판인인 오드햄즈(Odhams)출판사이다. 원고는 공작이 「더 피플」지에 쓴 기사에서 원고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사의 게재를 피고들이 하지 못하게 규제할 금지강제명령을 요청했다. (1)

결혼비밀의 침해 (2) 법정에서의 특정소송과 소송절차에 관한 것 (3) 이혼소송절차에서 제시된 증거에 대한 것 (4)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진술 등이 그 근거다. 이중 마지막 근거인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진술은 이 단계에서는 심리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피고들이 정당성 심사소송을 의뢰하고 있고, 소송이 의뢰되고 있는 한, 그 소송이 패소할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중간금지강제명령이 허가되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이 소송의 배경을 이루는 사실들을 간략히 언급하겠다. 원고와 공작은 12 년간 결혼생활을 했는데, 1959 년 9 월 공작은 그녀의 간통을 사유로 스코트랜드 법정에서 원고와의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1960 년 10 월 원고는 스코트랜드에서 이혼소송절차에 반대소송을 제출했다. 1962 년 5 월 29 일, 반대소송은 취하되었고 그것을 지지하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으나, 원고는 그 반대신청에서 하였던 비난을 발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게재를 규제할 금지강제명령을 내려주도록 요청했다. 1963 년 2 월, 이혼소송절차는 대법원 민사부에 의해 심리되었고, 뒤에 원고의 간통을 이유로 공작과 원고사이의 결혼취소판결이 내려졌다. 원고가 신청한 금지강제명령의 대상이 된 특정소송과 소송절차에 관한 것 중 하나는 심프슨 소송이며 다른 하나는 위그햄 소송이다. 심프슨 소송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959 년 5 월에 재혼하여 심프슨 부인이 된 바 있는 공작의 두 번째 부인과 공작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 로네(Lorne) 후작이 고등법원에서 현사건의 원고를 상대로 금지강제명령과 배상금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시작했다. 원고는 그 소송에 대해 항변하지 않았고 그녀에 대한 금지강제명령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항의에 의해 받아들여 졌다. 원고는 이 소송의 문제가 다시는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공작의 약속에 의거해서 그의 요청에 동의했다. 이런 사실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지강제 명령들 중의 하나가 되는 근거이다. 1959 년 11 월 1 일 심프슨 부인은 위 심프슨 소송의 금지강제명령 불이행으로 원고에 대해 구속소송절차를 시작했다. 1959 년 12 월 21 일, 그 소송절차는 파울 판사에 의해 강조된 바 있는 판사실에서의 소송절차에 대한 비밀이 금지강제명령의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한편 위그햄 소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62 년 6 월, 원고의 계모인 위그햄 (Wigham) 부인은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이혼반대소송에서 나타난 위그햄 부인에 대한 음모와 악의에 의한 고소, 명예훼손, 모욕적인 거짓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964 년 10 월 15 일 위그햄 소송은 법원 지시에 따라 짜여진 합의에 의해 취하되었다. 변호사의 공개법정에서 원고의 음모, 악의에 의한 고소, 모욕적인 거짓 등에 대한 주장은 기각되었지만, 원고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그램 부인에게 2,500 파운드와 그녀의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결정했었다. 또 당사자 모두가 이 소송에 관해 논쟁중인문제에 대해 어떤 사람에게도 언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었다고 말했다. 원고는 이런 상황에서 금지강제명령으로 공작에 대해 그 약속을 강요하게 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이 매우 간략한 사실과 원고가 요구한 근거의 지적이다. 이 요구들은 법의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첫째가 결혼생활 동안의 남편과 아내사이의 비밀이 법정에 의해 보호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혼소송절차의 당사자가 법정에 그 소송절차에 관한 출판을 금지하는 법률을 실시하도록 신청할 권한을 갖느냐 하는 것이다. 첫번째 문제는 원고가 요청한 첫 금지명령에 의해 발생하는데 그것은 피고들로부터 출판을 금지하는 것이다. 법적인 측면에서 첫째 법정이 어느 정도부부사이의 비밀과는 독립적으로 비밀 위반을

규제할 것인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법정이 계약이나 재산에 관한 권리에 의한 비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규제할 수도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만 법정이 보호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다음 두 판례에서 고려되었다. 첫째가 앨버트 왕자 사건인데 빅토리아 여왕과 앨버트 공이 그들의 아이들과 흥미있는 몇 사람의 그림과 판화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피고의 손에 들어가 그들이 복사판과 목록을 출판하기를 제안했다. 앨버트 왕자는 법정에 금지명령을 신청했는데 소유의 문제에서, 원고는 금지명령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났고, 소유문제를 떠나서 신뢰나 비밀, 혹은 계약의 침해로서도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었다. 두 번째 사건이 폴라드 대 사진회사 사건인데 돈을 받고 어떤 여자의 사진을 찍어준 사진업자는 그 현상사진을 팔거나 전시하지 못하도록 되었다. 인화지를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암시적인 계약이 있고 그러한 판매나 전시는 비밀의 침해라는 근거로 이러한 판례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1) 비밀계약이나 의무는 표현될 필요가 없고 암시될 수 있다. (2) 비밀이나 신뢰의 침해는 소유권이나 계약과 무관하게 발생될 수 있다. (3)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는 법정은 특정 법적권리와는 별도로 비밀의 위반을 규제할 것이다. 결혼은 법적 계약이나 관계, 지위 이상이지만 법적 계약이나 관계도 포함된다. 이제 결혼생활동안 부부사이의 비밀을 보면 법적 계약이나 관계, 지위 이상이지만 법적 계약이나 관계도 포함된다. 그러한 관계의 비밀성은 매우 본질적이고 암시적이어서 명시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결혼생활동안 부부의 비밀은 앞에서 열거한 판례들의 기준에 의해 법적보호로부터 제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선데이미러(Sunday Mirror)지에 쓴 기사에서 그녀와 남편사이의 비밀에 대한 상호의무를 스스로 깨뜨린 근거와 둘째, 결혼의 신성함에 대한 그녀의 태도로 봐서 그녀는 구제받아서는 안된다고 진술했다. 그러면, 원고는 그러하지 않았으면 인정받았을 금지명령을 그녀 자신이 비밀을 깨뜨렸고 그녀 결혼에 대해 비도덕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하여 거부당해야 하는가? 먼저 원고의 기사를 고려해 보면, 나는 원고 자신의 기사가 공작에 관한 기사에서의 부당한 문장들을 정당화 시킨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 원고가 법정의 보호를 포기해야 한다고 여기지 않는다. 원고의 간통은 불유쾌한 일이기는 하지만, 내 견해로는 남편이 쓴 이전의 행복한 날의 가장 깊은 비밀을 조사하지 않은 채 보도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음 심프슨 소송의 문제에 대한 정보의 소통과 발표를 제지하기를 요청하는 두 번째 금지명령을 살펴보면, 원고에 의한 신청의 첫째 근거는 공작이 그 소송에서 제기 된 문제를 다시는 발표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따라 원고가 금지명령에 따르기로 한 원고와 공작사이의 동의이다. 만약 그녀가 금지명령에 동의하면 다시는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공작이 약속했다는 원고의 진술에 대한 공작의 답변은, 그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더 피플지에 그러한 기사를 쓴 것은 다시는 거론치 않겠다고 약속한 사실에서 볼 때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가령 공작이 그의 약속은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한 것이라고 선서에서 수정하더라도 나에게는 이 상황의 본래의 가능성이 원고의 증거를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이 문제에 관해 공작의 증거보다는 원고의 증거를 채택해야 할 것 같다. 그러므로 나의 결론은 이 소송에 관련해서 요청된 금지명령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그 금지강제명령의 신청에서, 이

사건에서 두 번째 중요한 법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데, 즉 이혼소송절차의 당사자가 그 소송절차에 대한 출판을 금지하는 1926 년의 사법절차법을 실시하도록 법정에 신청할 권한을 갖느냐는 것이다. 반대소송절차의 문제에 대한 의사소통이나 출판의 반대는 공작의 이혼소송의 세부사항에 대한 출판을 반대하는 것과 같이 1926 년의 법률에 근거한 것이고 위그햄 소송의 문제에 대한 것은 다툼이 된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법정에 대한 당사자가 한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1926 년에 제정된 사법절차법 (1)의 (b),(i)항과 (2)항을 살펴보면 반대소송에서 당사자의 이름, 주소, 직업 이상의 세부사항을 인쇄·출판하거나, 인쇄 · 출판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며 특히 위그햄 소송의 문제를 포함해서 반대소송에서의 죄과를 밝힌다는 것은 비합법적이다. 공작이 쓴 여섯번째 기사에서 관련된 문장이 반대소송에서의 죄과를 밝히고 있어서 그 법에 의하면 이러한 출판은 비합법적이다. 그러나 피고들은 그 법이 출판을 비합법적이라고 하지만 원고는 출판을 금지시키려고 할 자격은 갖지 못한다고 제출했다. 이 중재는, 그 법에 의하면 비합법적 행동은 위반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근거에서, 신청된 것이므로 기소만이 그 법의 위반에 대한 규제 수단이고, 비합법적 출판에 의한 개인에 대한 침해는 그 법으로는 구제책이 없다고 주장되었다. 문제는 그 법이 공중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한 것인가 혹은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느냐 하는 것인데 만약 한 계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계층의 모든 성원은 공공위법 행위에 대한 형사소송절차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절차도 제기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그 법의 제 1 조를 세밀히 분석해 보면 그 법이 이혼소송절차에 주는 보호는 공중도덕의 보호에만 제한되지 않고, 그보다 넓은 범위와 목적에 해당되며 결혼소송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도 포함한다. 또한 피고들은 재산에 대한 손해를 포함하지않으면 금지결정이 1926 년 사법절차법에 위배되는 비합법적인 출판과 같은 위법행위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산에 대한 손해는 명예에 대한 훼손 등 다른 형태의 손해보다 덜 심각할 수 있으며, 재산에 대한 손해와 다른 형태의 손해를 구분하는 어떤 근거도 없으므로 본인의 견해로는 재산에 대한 손상을 포함되지 않고는 금지명령이 위법행위를 금지하도록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피고의 의도는 패소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인의 결론은, 원고는 반대소송과 이혼소송절차에 관해 요청한 대로 사실상 금지강제명령을 할 권한이 있고, 이미 지적했듯이 반대소송에 관한 금지명령은 공작의 기사 중 관련된 문장에서 반대에 대한 언급과 함께 묶여있는 위그햄 소송의 언급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것이다.다음으로 위그햄 소송의 문제발표는 그 소송의 해결에서 이루어진 약속에 포함된 정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금지명령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중재부탁에 관한 나의 결론은, 원고가 위그햄 소송의 문제에 대한 금지명령의 신청에 근거를 입증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결정신청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은 지난 주 금요일 상세한 형식으로 수정한다는 전제하에서 금지강제 명령들을 승인했고 각 금지명령에서 금지명령이 주어져야 할 공작의 기사중의 문장들을 지적했다.